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제처에 법제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법제처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호, 2024. 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8. ~ 2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35”를 “23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34”를 “235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85”를 “86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235”를 “23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34”를 “235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85”를 “8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35</u>	<u>236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34</u>	<u>235</u>	+1
·	·	·	
행정사무관	<u>85</u>	<u>86</u>	+1
·	·	·	

[별표 2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35</u>	<u>236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34</u>	<u>235</u>	+1
·	·	·	
행정사무관	<u>85</u>	<u>86</u>	+1
·	·	·	